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 년 12 월 17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파인밸류투자자문(주)
(영문명) FINDVALUE INVESTMENT MANAGEMENT
(홈페이지) http://www.findvalue.co.kr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빌딩 10 층
(전 화) 02-783-5069

대 표 이 사 : 최 호 열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이 사
(성 명) 정 영 인 (성 명) 정 영 인

작 성 자 : (직 책) 이 사
(성 명) 정 영 인 (전 화) 02-783-5036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11-1호)

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

1. 일시	2015. 12. 17	
2. 장소	파인밸류투자자문 본점 회의실	
3. 의안 주요내용	제 1호 의안 :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 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증액의 건 제 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15년 12월 17일	
-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-
-사외이사 참석여부	불참(명)	1
-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불참	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해당사항 없음	

【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】

구 분	내 용		이 유
1. 사업목적 추가	금융투자상품 등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		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
2. 사업목적 삭제	기업분석		
3. 사업목적 변경	변경 전	변경 후	
	1. 금융자산에의 투자 2. 기업분석 3. 투자자문업 4. 투자일임업 5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	1.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업 2.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자문업 3.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일임업 4. 금융투자상품 등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5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	